

##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3년 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전월대비 0.7% 감소

○ 2013년 1월 생산은 도소매업, 공공행정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컴퓨터(-62.6%), 기계장비(-5.6%), 영상음향통신(-6.8%)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15.0%), 자동차(17.9%), 기타운송장비(24.7%)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7.7% 증가(전월대비 1.1%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1.6%), 교육(-1.4%), 부동산 및 임대(-0.2%)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운수(4.8%), 금융 및 보험(4.5%), 보건 및 사회복지(4.4%), 숙박 및 음식점업(3.1%)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7% 증가(전월대비 0.9% 감소)함.

○ 2013년 1월 소비와 투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2.8%, 13.6%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3.8%)는 증가하였으나 음식료품, 서적·문구, 화장품 등 비내구재(-7.1%)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2.8% 감소(전월대비 2.0% 감소)함.

－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류 등에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3.6% 감소(전월대비 6.5% 감소)함.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공사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9.4% 증가(전월대비 6.5% 감소)하였으나 건설수주(경상)는 주택, 발전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53.0% 감소함.

- 2013년 1월 동행종합지수는 0.4% 상승, 현행종합지수 0.2% 상승
  - 소매판매액지수는 감소하였으나 건설기성액,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여 동행 종합지수는 2012년 1월 대비 0.4% 상승하였고,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함.
  - 1월 선행종합지수는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소비자 기대지수,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2% 상승하였고,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 2013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4% 상승(생활물가지수 0.8% 상승)

- 2013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2010=100)으로 나타나 전월대비 0.3%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하여 2012년 11월의 1.6% 상승 이후 4개월 연속 1%대 상승을 기록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기타상품 및 서비스(-4.4%) 부문만 하락하였고, 주택·수도·전기·연료(3.5%), 의류 및 신발(3.3%),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2.7%), 주류 및 담배(1.6%), 교육(1.8%), 음식 및 숙박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10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p	1월	1월p	
생산	광공업 생산	25.8	19.5	10.9	11.7	16.2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3.2	7.3(-1.5)
	제조업 생산	26.8	20.2	11.2	11.9	16.3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3.2	7.7( 3.6)
	출하	21.8	17.2	9.9	11.9	14.3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2.9	4.9(-1.1)
	내수	21.2	15.4	6.6	8.3	11.5	6.8	3.8	2.7	0.2	3.3	0.3	-1.3	-1.5	-1.9	-1.1	-5.1	4.7(-0.7)
	수출	22.5	19.7	14.5	16.9	18.1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0.1	4.9(-1.4)
	서비스업생산	5.7	4.0	2.3	3.1	3.9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0.4	1.7(-0.9)
소비	소비재 판매	9.9	4.9	7.5	5.1	6.7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2.0	-2.8(-2.0)
투자	설비투자	25.5	24.5	29.3	13.5	24.2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10.3	-13.6(-6.5)
물가		2.7	2.6	2.9	3.6	3.0	4.8	4.2	4.8	4.0	4.0	3.0	2.4	1.6	1.7	2.2	1.5	1.4( 0.3)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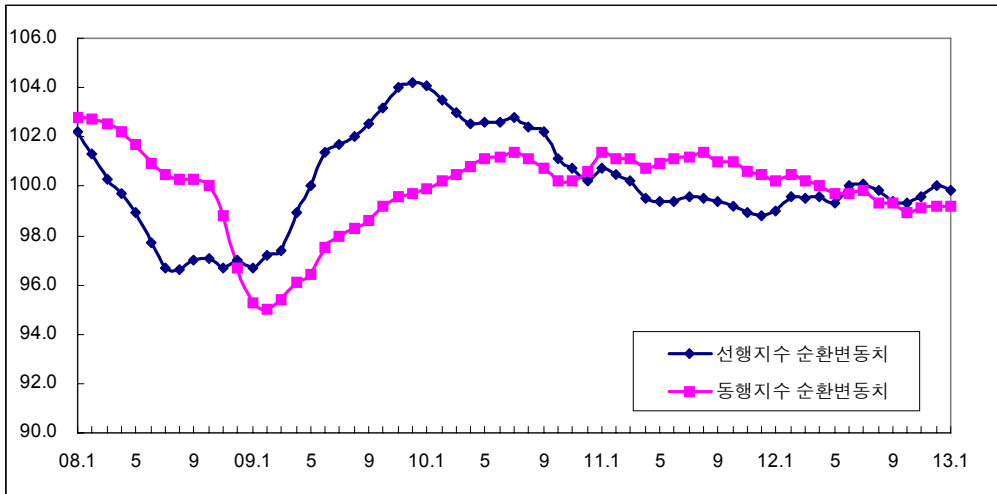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3년 2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하락

- 2013년 2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97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8천 명(0.6%)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675 천 명으로 59천 명(0.4%) 증가하였고, 여성은 10,298 천 명으로 89천 명(0.9%) 증가하였음.
- 2013년 2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59.6%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71.6%)은 전년동월대비 0.6%p, 여성(48.1%)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그림 4 좌측 참조).
- 2013년 2월 중 고용률은 57.2%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함.
  - 남성의 고용률은 68.6%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6.3%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음(그림 4 우측 참조).
- 2013년 2월 중 취업자는 23,98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1천 명(0.8%)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06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천 명(0.5%)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9,91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4천 명(1.6%)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 2013년 2월 중 실업자는 99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천 명(-5.1%)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음.
  - 남성 실업자는 61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천 명(2.1%) 증가한 반면, 여성 실업자는 37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5천 명(14.7%)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4.2%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성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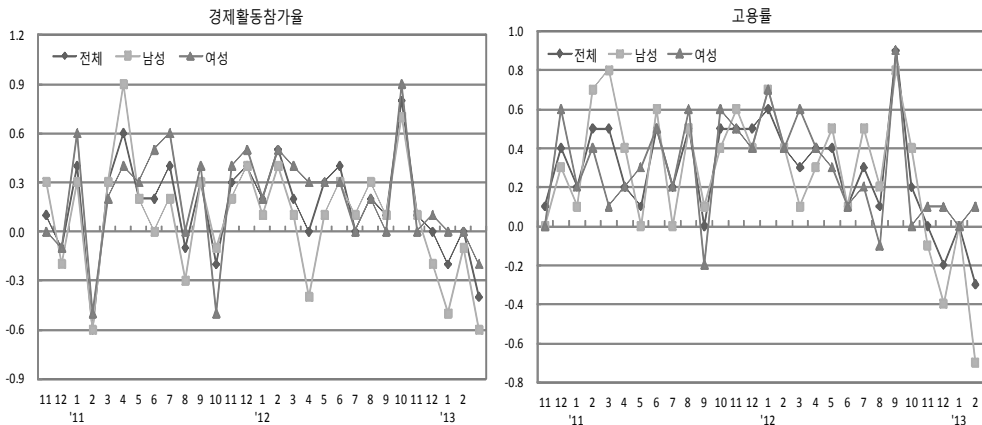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2월			4/4분기	1/4분기	
			1월	2월	3월		1월	2월
경제활동인구	25,202 ( 1.6)	24,873 ( 1.6)	24,825 ( 1.6)	25,844 ( 1.6)	25,760 ( 1.9)	25,526 ( 1.3)	24,901 ( 1.3)	24,973 ( 0.6)
참가율	61.1	60.1	60.0	62.3	61.8	61.1	59.5	59.6
취업자	24,462 ( 2.0)	23,927 ( 2.0)	23,783 ( 1.9)	25,003 ( 1.8)	24,989 ( 2.1)	24,804 ( 1.4)	24,054 ( 1.4)	23,984 ( 0.8)
고용률	59.4	57.8	57.5	60.2	60.0	59.4	57.4	57.2
실업자	740	947	1,042	841	770	722	847	990
실업률	2.9	3.8	4.2	3.3	3.0	2.8	3.4	4.0
비경제활동인구	16,014 ( 0.3)	16,495 ( 0.6)	16,544 ( 0.6)	15,669 ( 0.7)	15,904 ( 0.4)	16,258 ( 1.5)	16,975 ( 1.4)	16,953 ( 2.5)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3. 3), 『2013년 2월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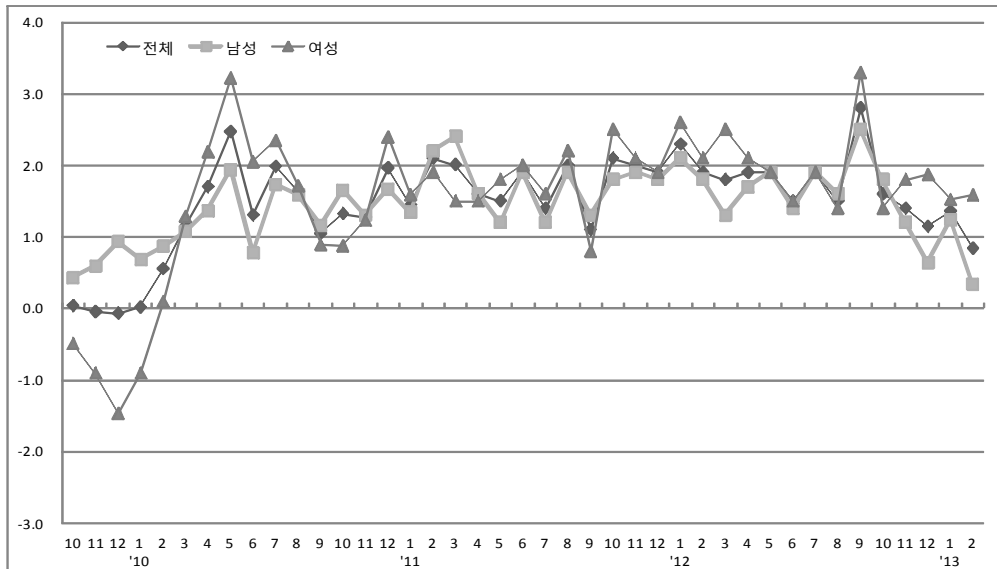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3년 2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95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9천 명(2.5%)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82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6천 명(3.7%)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1,12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3천 명(1.9%)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9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천 명 증가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84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6천 명(3.5%) 감소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115천 명으로 117천 명(2.9%) 증가함.

◆ 건설업 및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감소 지속

○ 2013년 2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79천 명, 1.9%)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72천 명, 3.3%)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95천 명, -5.6%)과 농림어업(15천 명, -1.4%)을 비롯한 타 산업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1월	2월
전 산업	24,462 ( 2.0)	23,927 ( 2.0)	23,783 ( 1.9)	25,003 ( 1.8)	24,989 ( 2.1)	24,804 ( 1.4)	24,054 ( 1.4)	23,984 ( 0.8)	
농림어업	1,521 (-1.5)	1,176 (-2.6)	1,109 (-3.2)	1,713 (-1.4)	1,706 ( 0.1)	1,518 (-0.2)	1,040 (-1.4)	1,094 (-1.4)	
제조업	4,056 (-1.8)	4,037 (-2.5)	4,060 (-2.1)	4,061 (-1.6)	4,126 ( 2.1)	4,196 ( 3.5)	4,189 ( 3.9)	4,139 ( 1.9)	
건설업	1,832 ( 4.0)	1,721 ( 4.8)	1,699 ( 4.7)	1,807 ( 1.9)	1,772 ( 1.0)	1,792 (-2.2)	1,671 (-2.8)	1,604 (-5.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42 ( 1.8)	5,571 (1.8)	5,565 ( 1.9)	5,596 ( 2.6)	5,610 ( 2.1)	5,603 ( 1.1)	5,610 (-0.1)	5,539 (-0.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486 ( 3.1)	8,398 ( 3.7)	8,328 ( 3.4)	8,820 ( 3.4)	8,772 (3.5)	8,682 ( 2.3)	8,534 (2.9)	8,600 (3.3)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3,011 ( 5.5)	3,011 ( 4.5)	3,007 ( 4.3)	2,991 ( 2.0)	2,990 (-0.4)	2,998 (-0.4)	2,996 (-0.3)	2,994 (-0.4)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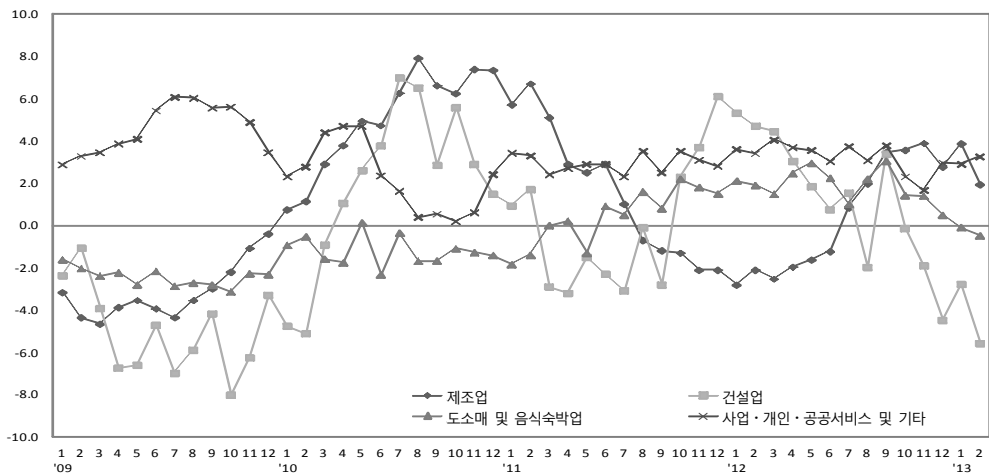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3. 3), 『2013년 2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세 둔화

- 2013년 2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49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천 명(1.0%)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49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7천 명(1.6%)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336천 명으로 529천 명(4.9%)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725천 명으로 151천 명(3.1%), 일용근로자는 1,431천 명으로 110천 명(7.1%) 감소함.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임시·일용 근로자는 5개월 연속 감소함(그림 7 좌측 참조).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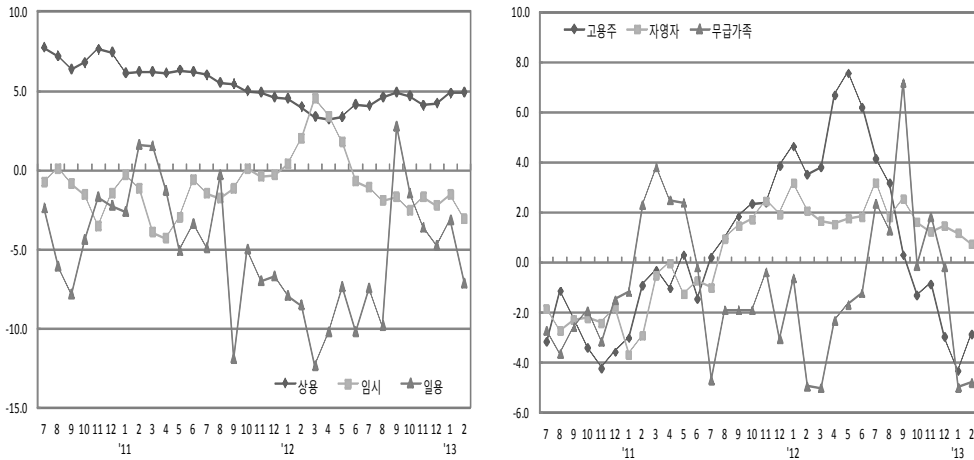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전 체	24,462 ( 2.0)	23,927 ( 2.0)	23,783 ( 1.9)	25,003 ( 1.8)	24,989 ( 2.1)	24,804 ( 1.4)	24,054 ( 1.4)	23,984 ( 0.8)
비임금근로자	6,878 ( 1.5)	6,650 ( 1.6)	6,558 ( 1.2)	7,154 ( 2.1)	7,154 ( 2.7)	6,917 ( 0.6)	6,473 (-1.1)	6,491 (-1.0)
자영업주	5,639 ( 2.3)	5,548 ( 2.8)	5,492 ( 2.5)	5,830 ( 3.1)	5,823 ( 2.5)	5,672 ( 0.6)	5,452 (-0.4)	5,476 (-0.3)
무급가족종사자	1,239 (-2.0)	1,102 (-3.6)	1,066 (-4.9)	1,324 (-1.7)	1,331 ( 3.6)	1,245 ( 0.5)	1,021 (-5.0)	1,015 (-4.8)
임금근로자	17,585 ( 2.2)	17,277 ( 2.1)	17,225 ( 2.2)	17,849 ( 1.6)	17,835 ( 1.8)	17,887 ( 1.7)	17,581 ( 2.3)	17,493 (1.6)
상용근로자	10,820 ( 4.8)	10,825 ( 4.0)	10,807 ( 4.0)	11,059 ( 3.5)	11,216 ( 4.5)	11,288 ( 4.3)	11,292 ( 4.9)	11,336 ( 4.9)
임시근로자	5,042 (-0.2)	4,914 ( 2.3)	4,877 ( 2.0)	5,114 ( 1.4)	4,992 (-1.6)	4,933 (-2.2)	4,791 (-1.6)	4,725 (-3.1)
일용근로자	1,723 (-6.3)	1,538 (-9.6)	1,542 (-8.5)	1,675 (-9.3)	1,627 (-5.2)	1,666 (-3.3)	1,498 (-3.1)	1,431 (-7.1)
36시간 미만	3,217 ( 4.1)	3,313 ( 2.1)	3,346 ( 3.7)	3,284 ( 2.3)	4,722 (-44.2)	3,219 ( 0.0)	3,371 ( 3.4)	9,964 (197.8)
36시간 이상	20,937 ( 1.5)	20,081 ( 1.7)	19,884 ( 1.3)	21,425 (1.7)	19,770 (28.2)	21,271 ( 1.6)	20,035 ( 1.5)	13,414 (-32.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3. 3), 『2013년 2월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3년 2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9,96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619천 명(197.8%) 급증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3,41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70천 명(32.5%) 급감함.
  - 이는 설 연휴기간 일부가 조사기간에 포함된 영향임.

◆ 청년층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 2013년 2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15~29세(9.1%, 0.8%p)에서 상승한 반면, 60세 이상(4.6%, 2.1%p)에서 감소하였음.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4.2%, 1.1%p)와 고졸(3.8%, 0.3%p)에서 하락한 반면, 대졸 이상(4.0%, 0.2%p)에서 상승하였음.
- 2013년 2월 중 전체 실업자 990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7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천 명 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915천 명으로 72천 명 감소했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전 체	740(2.9)	947(3.8)	1,042(4.2)	841(3.3)	770(3.0)	722(2.8)	847(3.4)	990(4.0)
15~29세	292(7.1)	346(8.2)	350(8.3)	341(8.1)	283(6.8)	284(7.0)	311(7.5)	371(9.1)
30~39세	171(2.9)	190(3.2)	202(3.4)	188(3.2)	166(2.8)	162(2.7)	193(3.3)	204(3.5)
40~49세	131(1.9)	164(2.4)	175(2.6)	135(2.0)	133(2.0)	122(1.8)	131(2.0)	142(2.1)
50~59세	94(1.8)	124(2.3)	132(2.5)	112(2.0)	123(2.2)	102(1.8)	119(2.2)	139(2.6)
60세 이상	53(1.8)	124(4.4)	184(6.7)	66(2.0)	65(1.9)	52(1.6)	93(3.3)	133(4.6)
중졸 이하	108(2.1)	187(4.0)	242(5.3)	112(2.2)	106(2.1)	98(2.0)	148(3.3)	184(4.2)
고졸	349(3.5)	408(4.1)	411(4.1)	356(3.5)	350(3.4)	321(3.2)	369(3.7)	381(3.8)
대졸 이상	284(2.8)	352(3.4)	390(3.8)	373(3.5)	314(3.0)	303(2.9)	331(3.2)	424(4.0)
취업무경험실업자	44	58	55	48	36	39	49	75
취업유경험실업자	696	889	987	793	734	683	798	915

주 :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2013. 3), 『2013년 2월 고용동향』.

(배기준,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2년 12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4.0% 상승

- 2012년 12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7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3,340천 원) 4.0% 상승함.
  - 2012년 12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모두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한 3,720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5.3% 상승해 2,603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하여 184천 원을, 특별급여 증가율은 1.3% 상승하여 933천 원을 기록함.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한 1,380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95천 원으로 전년대비(2,844천 원) 5.3%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1년 대비 5.3% 상승한 3,178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1년 대비 5.5%, 초과급여는 1.0%, 특별급여는 5.8% 상승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1년 대비 6.4% 상승한 1,293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12월 실질임금은 2.5% 상승함.
  - 2012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2.5% 상승을 기록함(그림 8 참조).
  -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3.1% 상승함.

〈표 6〉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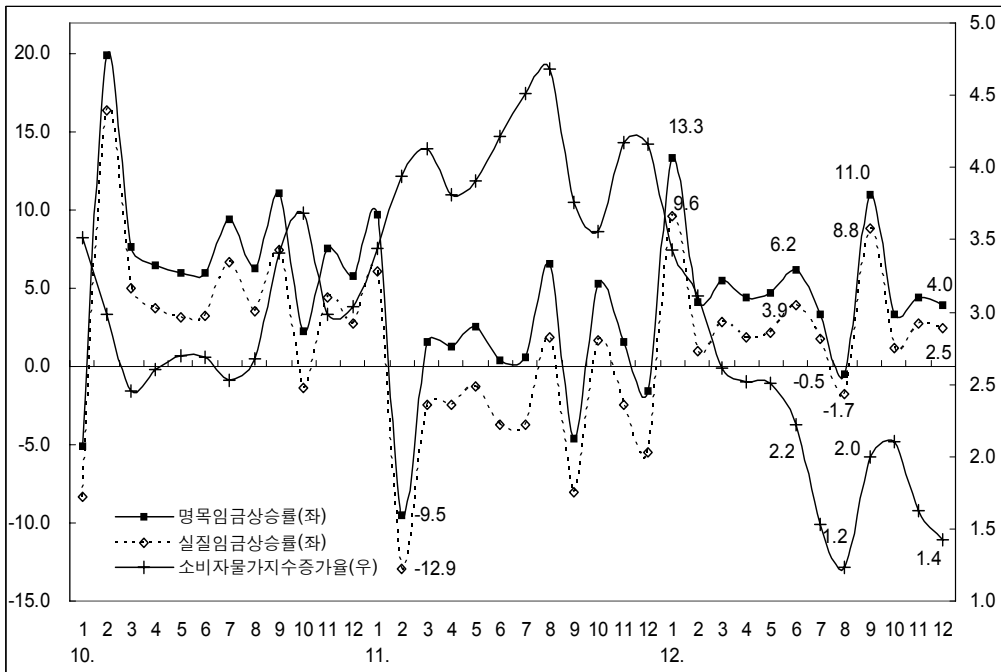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 2010=100.0)

		2009	2010	2011	2012	2012	
					12월	12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636 ( 2.6)	2,816 ( 6.8)	2,844 ( 1.0)	3,340 ( -1.6)	2,995 ( 5.3)	3,473 ( 4.0)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2,863 ( 2.2)	3,047 ( 6.4)	3,019 (-0.9)	3,575 ( -2.9)	3,178 ( 5.3)	3,720 ( 4.1)
	정액급여	2,139 ( 4.0)	2,234 ( 4.5)	2,341 ( 4.8)	2,472 ( 5.7)	2,470 ( 5.5)	2,603 ( 5.3)
	초과급여	175 (-2.2)	196 (12.2)	179 (-8.4)	181 (-10.8)	181 ( 1.0)	184 ( 1.7)
	특별급여	550 (-2.8)	617 (12.3)	498 (-19.3)	921 (-19.1)	527 ( 5.8)	933 ( 1.3)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073 ( 1.9)	1,056 (-1.6)	1,215 (15.1)	1,318 ( 26.7)	1,293 ( 6.4)	1,380 ( 4.7)
소비자물가지수		97.1 ( 2.8)	100.0 ( 2.9)	104.0 ( 4.0)	105.2 ( 4.2)	106.3 ( 2.2)	106.7 ( 1.4)
실질임금증가율		-0.1	3.8	-2.9	-5.5	3.1	2.5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2010=10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2년 12월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상승률 상승

- 2012년 12월 기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광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2012년 12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2%), 부동산업 및 임대업(9.8%), 운수업(8.6%)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나타남.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 2012년 기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임금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년 기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임금이 증가함.
  -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8.8%), 운수업(8.2%), 도매 및 소매업(6.1%), 제조업(6.1%) 등에서 두드러짐.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2월	12월	12월
전 산업	2,816( 6.8)	2,844( 1.0)	3,340( -1.6)	2,995( 5.3)	3,473( 4.0)
광업	3,000( 7.3)	3,309(10.3)	3,680( 10.5)	3,470( 4.9)	3,231(-12.2)
제조업	2,985( 9.1)	3,034( 1.6)	3,740( -0.8)	3,221( 6.1)	3,916( 4.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55( 7.0)	5,482( 0.5)	9,601( 1.1)	5,388(-1.7)	8,525(-11.2)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 5.2)	2,488( 1.9)	2,914( -0.7)	2,654( 6.7)	3,179( 9.1)
건설업	1,944( 7.9)	2,181(12.2)	2,289( 0.9)	2,273( 4.2)	2,421( 5.8)
도매 및 소매업	2,769( 7.1)	2,942( 6.3)	3,752( 8.9)	3,122( 6.1)	3,795( 1.1)
운수업	2,381( 5.4)	2,393( 0.5)	2,688( -1.2)	2,589( 8.2)	2,918( 8.6)
숙박 및 음식점업	1,462( 5.0)	1,653(13.0)	1,783( 12.6)	1,738( 5.2)	1,843( 3.4)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85( 4.7)	3,692( 9.1)	3,908( -1.1)	3,851( 4.3)	4,163( 6.5)
금융 및 보험업	4,680( 4.7)	4,771( 1.9)	5,473( 1.2)	4,988( 4.6)	5,671( 3.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 4.3)	2,017( 2.6)	2,271( 0.8)	2,194( 8.8)	2,493( 9.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 6.9)	3,870(-2.2)	4,671( -7.3)	4,112( 6.3)	5,193( 11.2)
사업서비스업	1,848( 8.2)	1,700(-8.0)	1,880(-12.4)	1,789( 5.3)	1,965( 4.5)
교육서비스업	3,157( 1.4)	2,985(-5.4)	2,994( -3.2)	3,123( 4.6)	3,100( 3.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 2.4)	2,490(-4.0)	2,871( 0.7)	2,608( 4.7)	2,803( -2.4)
여가관련서비스업	2,107( 0.9)	2,130( 1.1)	2,774( -3.1)	2,211( 3.8)	2,778( 0.1)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02( 4.0)	2,185( 3.9)	2,355( 0.9)	2,228( 2.0)	2,468( 4.8)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12월 사업체규모별 전체에서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 상승

- 2012년 12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모두 상승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012년 12월 기준 3,23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2% 상승하였으며, 이는 정액급여(5.2%), 초과급여(5.7%)와 특별급여(4.9%) 상승에 기인함.
  - 300인 이상 사업체의 2012년 12월 상용임금총액은 5,450천 원으로 2011년 12월 대비 2.8% 상승하였으며, 이는 정액급여(6.0%) 상승의 영향임.
  - 반면 300인 이상 규모의 초과급여(-5.1%)와 특별급여(-0.8%)는 감소함.
- 2012년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증가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5.9%)과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상승률(3.5%)은 모두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 그러나 300인 이상 규모의 초과급여(-3.9%)는 마이너스를 기록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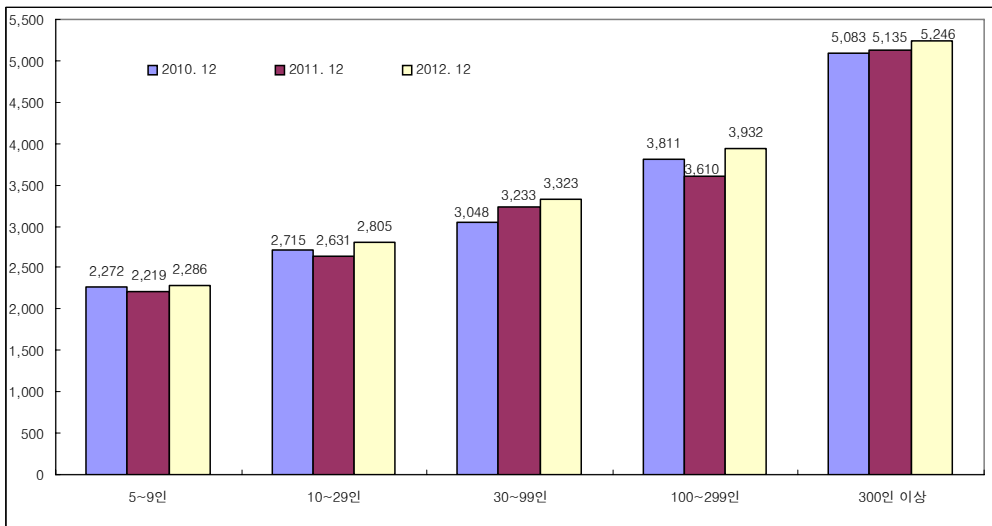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0	2011	12월	2012	12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047 ( 6.4)	3,019 ( -0.9)	3,575 ( -2.9)	3,178 ( 5.3)	3,720 ( 4.1)
	정액급여	2,234 ( 4.5)	2,341 ( 4.8)	2,472 ( 5.7)	2,470 ( 5.5)	2,603 ( 5.3)
	초과급여	196(12.2)	179( -8.4)	181(-10.8)	181( 1.0)	184( 1.7)
	특별급여	617(12.3)	498(-19.3)	921(-19.1)	527( 5.8)	933( 1.3)
	비상용임금총액	1,056(-1.6)	1,215( 15.1)	1,318( 26.7)	1,293( 6.4)	1,380( 4.7)
5~299인	상용임금총액	2,699 ( 5.5)	2,675 ( -0.9)	3,079 ( -4.2)	2,834 ( 5.9)	3,239 ( 5.2)
	정액급여	2,082 ( 4.3)	2,204 ( 5.9)	2,320 ( 6.6)	2,333 ( 5.9)	2,441 ( 5.2)
	초과급여	176(13.6)	150(-14.5)	153(-16.1)	156( 3.5)	162( 5.7)
	특별급여	441( 8.4)	321(-27.3)	606(-29.0)	345( 7.7)	635( 4.9)
	비상용임금총액	1,059(-1.6)	1,216( 14.8)	1,330( 26.3)	1,301( 7.0)	1,389( 4.4)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291 ( 9.1)	4,273 ( -0.4)	5,301 ( -1.0)	4,424 ( 3.5)	5,450 ( 2.8)
	정액급여	2,779 ( 5.2)	2,842 ( 2.3)	3,002 ( 2.9)	2,965 ( 4.3)	3,183 ( 6.0)
	초과급여	268 ( 9.6)	286 ( 6.7)	279 ( 0.9)	275(-3.9)	265(-5.1)
	특별급여	1,245(18.7)	1,146( -8.0)	2,019( -6.5)	1,185( 3.4)	2,002(-0.8)
	비상용임금총액	1,025(-0.3)	1,208( 17.8)	1,183( 25.2)	1,209( 0.1)	1,296( 9.6)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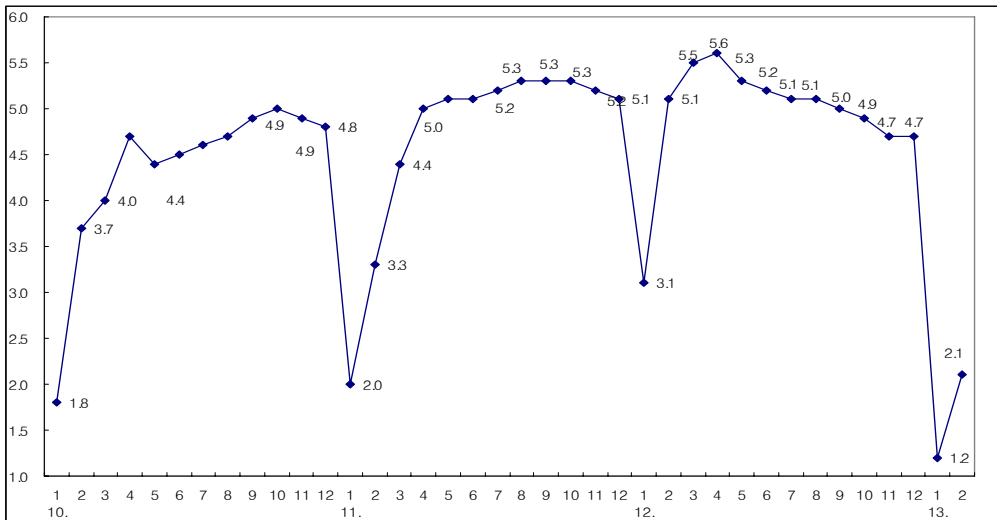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2월 협약임금 인상률 2.1%

- 2013년 2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2.1%로 2012년 2월 인상률(5.1%)에 비해 3.0%p 하락
  - 2012년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7%로 전년 인상률(5.1%)에 비해 0.4%p 하락함.

[그림 10]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2년 12월 근로시간 9.5% 감소

- 2012년 12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9.5% 감소함.
  - 2012년 12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66.4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83.9시간)에 비해 17.5시간(-9.5%) 감소함(표 9 참조).
- 2012년 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함.
  - 2012년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4.3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176.3시간)에 비해 2시간(-1.1%) 감소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2월	12월	
전체근로시간	176.7( 0.3)	176.3( -0.2)	183.9( -2.2)	174.3(-1.1)	166.4( -9.5)
상용총근로시간	184.7( 0.2)	182.1( -1.4)	190.6( -3.2)	179.9(-1.2)	171.2(-10.2)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8.3(-0.6)	168.5( 0.1)	177.3( -1.9)	167.2(-0.8)	158.4(-10.7)
상용초과근로시간	16.4( 8.6)	13.6(-17.1)	13.2(-18.5)	12.8(-5.9)	12.8( -3.0)
비상용근로시간	115.4(-3.3)	122.5( 6.2)	126.5( 10.2)	122.3(-0.2)	125.7( -0.6)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12월 전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2년 12월 전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2년 12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교육서비스업(138.2시간, -13.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2.6시간, -13.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51.2시간,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0	2011	2012		
			12월	12월	
전 산업	176.7( 0.3)	176.3(-0.2)	183.9(-2.2)	174.3(-1.1)	166.4( -9.5)
광업	188.1( 0.3)	186.9(-0.6)	197.0(-3.7)	185.3(-0.9)	176.8(-10.3)
제조업	192.1( 1.9)	190.6(-0.8)	197.4(-3.2)	186.4(-2.2)	178.8( -9.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6.9(-0.6)	177.1( 0.1)	186.2(-1.8)	175.5(-0.9)	170.0( -8.7)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92.9(-0.6)	186.2(-3.5)	195.2(-5.3)	184.8(-0.8)	177.6( -9.0)
건설업	146.1(-0.7)	153.9( 5.3)	157.5( 0.8)	152.5(-0.9)	152.0( -3.5)
도매 및 소매업	177.2(-1.0)	175.1(-1.2)	183.8(-1.8)	174.5(-0.3)	167.2( -9.0)
운수업	184.6( 0.1)	181.6(-1.6)	190.9(-0.7)	181.7( 0.1)	173.9( -8.9)
숙박 및 음식점업	163.7(-0.4)	186.2(13.7)	194.7(13.2)	186.6( 0.2)	182.2( -6.4)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6.2(-0.4)	164.5(-1.0)	171.3(-4.6)	163.9(-0.4)	151.2(-11.7)
금융 및 보험업	165.3(-0.9)	163.6(-1.0)	172.1(-4.5)	163.4(-0.1)	150.9(-12.3)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0.4(-0.8)	194.2(-3.1)	206.5(-1.7)	193.4(-0.4)	185.3(-10.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6.3(-0.8)	166.2(-0.1)	176.1(-1.8)	165.3(-0.5)	152.6(-13.3)
사업서비스업	180.1( 0.6)	172.1(-4.4)	182.8(-4.8)	173.1( 0.6)	163.9(-10.3)
교육서비스업	149.9(-2.5)	152.9( 2.0)	159.4( 0.6)	151.1(-1.2)	138.2(-13.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5( 0.1)	173.5(-1.7)	184.3(-2.3)	174.8( 0.7)	167.5( -9.1)
여가관련서비스업	158.7(-1.8)	157.1(-1.0)	162.8(-1.5)	158.1( 0.6)	154.0( -5.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9(-0.9)	173.6(-0.2)	179.4(-0.2)	168.9(-2.7)	163.8( -8.7)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11.7%)의 근로시간 감소가 컸고, 그 외 전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2년 12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85.3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교육서비스업(138.2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2012년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2년 근로시간이 증가한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4.8, 0.7%), 사업서비스업(173.1시간, 0.6%), 여가관련서비스업(158.1시간, 0.6%), 숙박 및 음식점업(186.6시간, 0.2%), 운수업(182.4시간, 0.9%)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반면 제조업(186.4시간, -2.2%), 교육서비스업(151.1시간, -1.2%), 건설업(152.5시간, -0.9%)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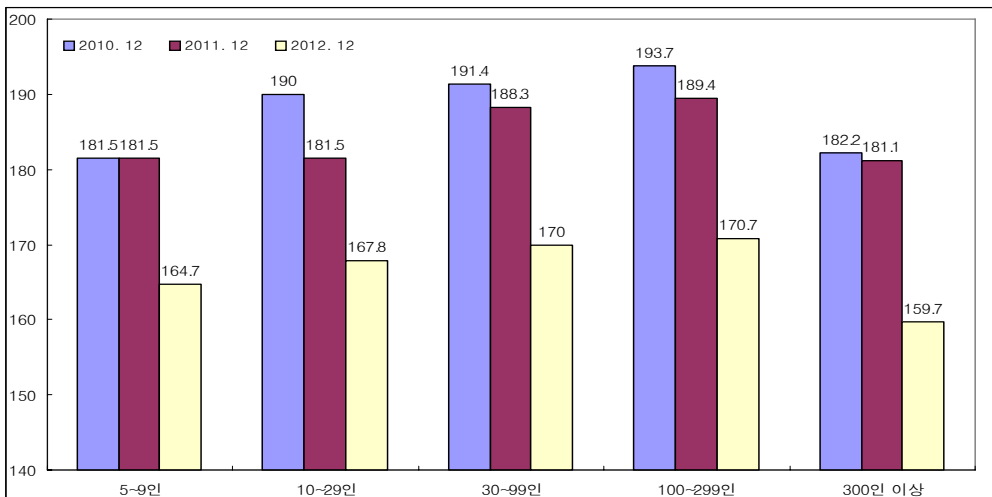
◆ 2012년 12월 모든 규모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2년 12월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4.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9.3%,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7.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5%,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0.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9.7%,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0.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9.9%,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59.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8% 감소함(그림 11 참조).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편 2012년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은 전 규모에서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2012년 총 근로시간은 171.5시간으로 전년대비 1.2%,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3시간으로 전년대비 1.2%,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1시간으로 전년대비 0.5%,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5시간으로 전년대비 0.9%,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0시간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함.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신세계 이마트, 1만여 명 정규직 전환

- 신세계 이마트는 3월 4일 전국 146개 매장의 하도급 직원 1만여 명을 4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한다고 밝힘.
  - 3월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월 28일 고용노동부가 판매 도급사원 1,978명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짐.
  - 이들은 정규직 전환 후 정년보장과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대상이 되고 학자금, 의료비 등 복지 혜택을 받게 됨.
  -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일자리의 질 자체를 높이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비정규직 직원은 종일 근무가 어렵거나 본인의 사정 때문에 단기 근무를 선택한 경우라 무조건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
  - 한편 야당의 한 의원은 “직접고용 이후 이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함.
- 이러한 신세계 이마트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업체와 업종의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롯데마트 관계자는 “2013년 상반기 중으로 1,000여 명의 사내하도급 직원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함.

- 한 재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등 다른 업종에서 유사한 문제로 논란이 있는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 대림산업, 전남 여수공장 폭발사고를 둘러싼 논란

- 3월 14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폴리에틸렌(HDPE)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함.
  - 3월 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경찰은 대림산업 본사와 여수공장, 하청업체인 유한기술, 대전시 유성구 대림연구소 등 4곳을 압수수색함.
  - 고용노동부는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해 19일부터 2주간 특별감독에 들어감. 특별감독을 통해 △현장 상황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게시 여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과 교육, 협력업체 관리 등을 살필 계획임.
- 이에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등은 대림산업 폭발사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폭발사고 원인에 대한 공동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함.
  - 한 노동계 관계자는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한편, 원청업체가 산업안전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함.

### ◆ 경남도, 진주의료원 휴업 예고

- 경남도는 3월 18일 진주의료원 휴업을 공식 발표함.
  -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휴업 발표문’을 통해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결정 이후 입원환자와 직원 고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상태를 방치할 경우에 환자들의 건강에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불가피하게 휴업을 결정하였고, 18일부터 30일까지 예고기간을 둔 후 걱정한 시점에 휴업하겠다”고 밝힘.
  -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진주지역은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으로 진주의료원이 매년 40억~6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현재 300억 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였음.

-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은 2008년부터 36회에 걸친 도의 구조조정 요청과 도의회의 11회에 걸친 구조조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휴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함.
-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공공병원 육성 및 발전 방안과 경남도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힘.
  - 또한 야당의 한 의원은 “국민건강권을 고려하지 않고 폐업을 강행한다면 전국 지방의료원의 위기로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함.
  - 진주의료원 입원환자와 보호자 측은 “환자들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함.
  -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12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규약 개정을 둘러싼 논란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3월 19일 출범식에서 10만 교원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힘.
  - 이들은 지난 2월 26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교원노조법의 관련 조항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사유로 노조설립을 취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노조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함.
  - 이는 고용노동부의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한 것임.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2일 “해직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따르지 않아 법적지위 상실 통보를 고려 중”이라고 밝힘.
  - 한편 3월 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5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설립 취소하려는 절차를 중단하고, 해직교사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는 요구를 한국 정부에 서면 통보했다”고 전해짐.

◆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 현대자동차는 3월 4일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함.
  - 이에 따라 주간조는 오전 6시 5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야간조는 15시 30분부터 다음 날 01시 30분까지 근무함.
  - 현대자동차 노사 모두 “제도도입으로 밤샘근무가 사라져 건강해지고 늘어난 여가 시간으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어서 좋다”며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
  - 한편 이날 기아자동차도 주간연속 2교대제를 본격 시행하였고, 한국지엠은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 또한 “2014년 3월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를 순차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함.
- 하지만 주말근무 형식에 관해 현대자동차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노조가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고는 주말특근에 대해 과거 심야근무 때와 같은 할증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함.
  - 반면 현대자동차 노조 측은 19일 “회사 측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특근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힘. 이들은 “높아진 UPH(시간당생산성)을 반영한 추가 임금보전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원활한 특근을 위해서는 조합원에게 유리한 임금과 운영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주장함.
  - 이에 한 노동계 전문가는 “현대자동차 노사 모두 주말 특근 노사협약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말 특근 거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 현재 현대자동차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한 이후 주말 특근을 중단한 상태임.
-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 김모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힘.
  - 이 날 재판부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1인을 정규직으로 간주한 판결은 상대적 효력 밖에 없어 이를 다른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기 위해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벌인 불법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함.
  - 이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423명이 제기한 부당해고·부당징계구제신청 재심신청 사건에서 “51개 하청업체 중에서 32개

업체 279명은 불법과건에 해당하고, 19개 업체 사내하청 근로자 144명은 합법도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복직**

-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489명은 3월 5일 복직함.
  -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향후 생산물량이 늘어나면 노사합의에 의거해 추가 복직도 고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 노조 측은 무급휴직자 복귀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여전히 노사간에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는 입장임. 이번 복직 대상에서 제외된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 등 2,000여 명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임.
-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관계자와 야당의 한 의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의 원인이 된 회계조작과 기획부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함.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며, 산재보험급여 관련 고시금액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국내에서 직업적 노출 가능성이 높고 건강에 영향이 큰 35종류 유해요인을 추가하고 명칭 등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수정하며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등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잠복기가 있는 신규 질병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라 현행 평균임금 산정 특례 직업병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산재보험급여 관련 고시금액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새로운 유해요인을 반영하고 최신 경향에 맞게 관련 용어와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산재보험 산정 시 변경된 기준

을 반영하여 산재보상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 업무상 질병에 직업성 암 유발요인 10종류 등 14종류의 유해요인과 업무상 질병을 추가하고 용어 수정 및 분류체계를 재구성하고자 함.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새로운 질병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근로기준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밝혀진 유해요인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반영하고 용어를 수정하며 업무관련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등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함. [KLI]

(박지은, 노동정책분석실 연구원)